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번호	080616		
등록번호	120111-0806169		
<b>상 호</b>	주식회사 폴루스 (POLUS Inc.)		. . .
<b>본 점</b>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엠1202호(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아 이티센터)		. . .

<b>광고방법</b>	<del>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olus.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 신문에 게재한다.</del>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olus-global.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 신문에 게재한다.	2016.12.23 변경	2017.01.16 등기

<b>1주의 금액</b>	금 500 원		
---------------	---------	--	--

<b>발행할 주식의 총수</b>	<del>100,000,000 주</del>		
	200,000,000 주	2016.12.23 변경	2017.01.16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del>2,000,000 주</del>	
<del>보통주식</del>	<del>2,000,000 주</del>	
발행주식의 총수	4,785,513 주	2016.04.07 변경
<del>보통주식</del>	<del>4,785,513 주</del>	2016.04.07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5,385,513 주	2016.04.21 변경
<del>보통주식</del>	<del>5,385,513 주</del>	2016.04.21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10,771,026 주	2016.04.25 변경
<del>보통주식</del>	<del>10,771,026 주</del>	2016.04.25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11,119,494 주	2016.05.10 변경
<del>보통주식</del>	<del>11,119,494 주</del>	2016.05.10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11,300,094 주	2016.05.19 변경
<del>보통주식</del>	<del>11,300,094 주</del>	2016.05.19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12,119,014 주	2016.06.08 변경
<del>보통주식</del>	<del>12,119,014 주</del>	2016.06.08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12,212,152 주	2016.09.22 변경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080616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del>보통주식</del>	<del>12,212,152 주</del>	<del>금 6,106,076,000 원</del>	2016.10.05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13,648,933 주		2016.10.29 변경
<del>보통주식</del>	<del>13,648,933 주</del>	<del>금 6,824,466,500 원</del>	2016.11.02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14,338,933 주		2016.12.03 변경
<del>보통주식</del>	<del>14,338,933 주</del>	<del>금 7,169,466,500 원</del>	2016.12.08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3,016,799 주		2017.01.27 변경
<del>보통주식</del>	<del>43,016,799 주</del>	<del>금 21,508,399,500 원</del>	2017.02.03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4,269,899 주		2018.03.14 변경
<del>보통주식</del>	<del>44,269,899 주</del>	<del>금 22,134,949,500 원</del>	2018.03.15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5,247,579 주		2018.06.29 변경
<del>보통주식</del>	<del>45,247,579 주</del>	<del>금 22,623,789,500 원</del>	2018.07.04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5,275,291 주		2018.07.13 변경
<del>보통주식</del>	<del>45,275,291 주</del>	<del>금 22,637,645,500 원</del>	2018.07.13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6,328,291 주		2018.09.04 변경
<del>보통주식</del>	<del>46,328,291 주</del>	<del>금 23,164,145,500 원</del>	2018.09.07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7,018,358 주		2018.09.14 변경
<del>보통주식</del>	<del>47,018,358 주</del>	<del>금 23,509,179,000 원</del>	2018.09.21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7,693,358 주		2018.09.22 변경
<del>보통주식</del>	<del>47,693,358 주</del>	<del>금 23,846,679,000 원</del>	2018.10.01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7,871,914 주		2018.12.31 변경
<del>보통주식</del>	<del>47,871,914 주</del>	<del>금 23,935,957,000 원</del>	2019.01.14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7,914,769 주		2018.12.31 변경
<del>보통주식</del>	<del>47,914,769 주</del>	<del>금 23,957,384,500 원</del>	2019.01.14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7,953,336 주		2019.01.08 변경
<del>보통주식</del>	<del>47,953,336 주</del>	<del>금 23,976,668,000 원</del>	2019.01.22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7,957,621 주		2019.01.09 변경
<del>보통주식</del>	<del>47,957,621 주</del>	<del>금 23,978,810,500 원</del>	2019.01.22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7,967,621 주		2019.01.10 변경
<del>보통주식</del>	<del>47,967,621 주</del>	<del>금 23,983,810,500 원</del>	2019.01.22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7,989,047 주		2019.02.22 변경
보통주식	47,989,047 주	금 23,994,523,500 원	2019.02.25 등기

**목 적**

1. 기업경영자문 및 시스템컨설팅업
1. 의약품, 원료의약품, 화학약품 등의 제조, 가공 및 판매
1.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1. 동물약품, 농예약품, 사료 및 사료첨가제의 제조, 가공 및 판매
1. 화장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
1. 각호와 관련한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1. 각호와 관련한 전자상거래 및 시스템컨설팅업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20년03월09일 13시51분36초

등기번호	080616
------	--------

- 1. 각호와 관련한 수탁가공
- 1. 각호와 관련한 물류, 창고업
- 1. 각호와 관련한 수출입업
- 1. 각호와 관련한 기술용역
- 1. 부동산임대업
- 1.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남승현 650102-*****	2019년 03월 28일 중임	2019년 04월 12일	등기
<del>사내이사 박주호 701222-*****</del>	2018년 06월 12일 사임	2018년 06월 18일	등기
사내이사 소민영 590125-*****	2019년 03월 28일 중임	2019년 04월 12일	등기
<del>감사 오상윤 581027-*****</del>	2019년 03월 28일 퇴임	2019년 04월 12일	등기
<del>대표이사 남승현 65010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497번길 57, 205동 1802호(박달동, 한신희플러스타운)</del>			
대표이사 남승현 65010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497번길 57, 205동 903호(박달동, 한신희플러스타운)	2016년 03월 08일 주소변경	2016년 03월 21일	등기
	2019년 03월 28일 중임	2019년 04월 12일	등기
<del>사외이사 우의형 480305-*****</del>	2016년 06월 24일 취임	2016년 07월 08일	등기
	2019년 06월 24일 퇴임	2019년 07월 02일	등기
<del>사외이사 서진호 531224-*****</del>	2016년 06월 24일 취임	2016년 07월 08일	등기
	2019년 03월 28일 사임	2019년 04월 12일	등기
<del>기타비상무이사 임유 641003-*****</del>	2016년 12월 23일 취임	2017년 01월 23일	등기
	2017년 03월 14일 사임	2017년 03월 15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터키국인 마흐멧레반트셀라모글루 1959년 9월 16일생	2016년 12월 23일 취임	2017년 01월 23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김한신 1973년 4월 11일생	2017년 10월 27일 취임	2017년 11월 08일	등기
<del>사외이사 서진오 531224-*****</del>	2019년 03월 28일 취임	2019년 04월 12일	등기
사외이사 서진호 531224-*****	2019년 07월 02일 성명경정	2019년 07월 02일	등기
사내이사 남주현 681110-*****	2019년 03월 28일 취임	2019년 04월 12일	등기
사내이사 김진환 620317-*****	2019년 03월 28일 취임	2019년 04월 12일	등기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080616
사내이사 김도희 700123-***** 2019년 03월 28일 취임	2019년 04월 12일 등기
사외이사 이종기 640620-***** 2019년 03월 28일 취임	2019년 04월 12일 등기
사외이사 이광근 680614-***** 2019년 03월 28일 취임	2019년 04월 12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터키국인 메틴산작 1980년 4월 1일생 2019년 03월 28일 취임	2019년 04월 12일 등기
감사 백영진 630803-***** 2019년 03월 28일 취임	2019년 04월 12일 등기

**기 타 사 항**

1.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2016년 11월 08일 변경      2016년 11월 09일 등기
1. 흡수합병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27층 엠-2701호(송도동) 주식회사 폴루스바이오머트리얼스  
를 합병  
2018년 07월 13일 등기

**전 환 사 채**

- 제1회 전환사채  
< 2016년 11월 24일 발행      2016년 12월 08일 등기 >
1. 전환사채의 총액  
~~금 사십억원정(4,000,000,000)~~  
< 2016년 11월 24일 발행      2016년 12월 08일 등기 >  
금 일십칠억원정(1,700,000,000)  
< 2018년 09월 14일 일부전환      2018년 09월 21일 등기 >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금 오억원권 8매~~  
< 2016년 11월 24일 발행      2016년 12월 08일 등기 >  
금 오억원권 4매, 금 일억원권 16매, 금 오천만원권 8매  
< 2018년 07월 20일 변경      2018년 08월 07일 등기 >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사채의 권면금액의 100프로  
< 2016년 11월 24일 발행      2016년 12월 08일 등기 >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1. 본건 전환사채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본건 전환사채 권면금액의 100%로 하고, 전환가격은 회사 보통주식 1주(액면금액 500원)당 사채 금액 10,000원으로 한다.
    2.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

등기번호

080616

하는 경우는 그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본 호의 경우 조정일은 공모청약일로 한다.

3.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과의 합병, 주식교환 등을 통해 상장을 위한 심사나 공모주 청약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상장되는 등의 이른바 '우회상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먼저 아래 5호 내지 8호의 규정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 후 우회상장의 효과가 발생한 당시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 조정된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당시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그 때로부터 3년간 매 6개월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우회상장의 효과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전환 시 발행될 주식과 동일한 종류의 구주의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최근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직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4. 회사가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5.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아래의 수식에 따라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x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 주식수x1주당 발행가액/시가)}] / (기발행 주식수+신발행 주식수)

(위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시가"는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기 전까지는 2호, 5호, 7호, 8호의 규정에 의한 "전환가격"으로 하되, 상장된 이후에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론 권리락주가 (유상증자 시) 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한다)

6. 합병,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주식의 분할 및 병합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7. 조정 후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미만으로 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는 주총결의 및 법원의 인가 등 액면가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액면가 미만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것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액면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액면가격으로 하는 경우, 추후 관련법규의 변경으로 액면가격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2016년 11월 24일 발행 2016년 12월 08일 등기 >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기명식 보통주식

< 2016년 11월 24일 발행 2016년 12월 08일 등기 >

1. 전환청구기간

투자자는 그 발행일(2016년 11월 24일)로부터 만기 직전일(2019년 11월 22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전환사채를 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2016년 11월 24일 발행 2016년 12월 08일 등기 >

전 환 사 채

제2회 전환사채

1. 전환사채의 총액

금 일십오억원(1,500,000,000)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금 일억원권 15매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프로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1. 전환비율: 각 사채 권면금액(2이상의 사채로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으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청구 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2. 전환가액: 금 칠천원(7,000)

3. 전환가액의 조정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left\{ \frac{A+(B \times C/D)}{A+B} \right\}$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다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등기번호	080616
------	--------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18년 12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기명식 보통주식

1.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8년 12월 13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 전 1개월이 되는 날(2020년 11월 13일)까지로 한다.  
2017년 12월 13일 발행      2017년 12월 22일 등기

전 환 사 채	
제3회 전환사채	
< 2017년 12월 27일 발행	2018년 01월 09일 등기 >
1. 전환사채의 총액	
<del>금 일십오억원(1,500,000,000)</del>	
< 2017년 12월 27일 발행	2018년 01월 09일 등기 >
<del>금 250,000,000원</del>	
< 2018년 12월 31일 일부전환	2019년 01월 14일 등기 >
금 100,000,000원	
< 2019년 02월 22일 일부전환	2019년 02월 25일 등기 >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금 오천만원권 30매	
< 2017년 12월 27일 발행	2018년 01월 09일 등기 >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프로	
< 2017년 12월 27일 발행	2018년 01월 09일 등기 >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1.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2. 전환비율: 각 사채 권면금액(2이상의 사채로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으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인정하지 아니 하며,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청구 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3. 전환가액: 금 칠천원(7,000)

4. 전환가액의 조정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 [A+(BxC/D)] / (A+B) \}$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다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18년 12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 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등기번호	080616
------	--------

<p>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p> <p>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lt; 2017년 12월 27일 발행 2018년 01월 09일 등기 &gt;</p> <p>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기명식 보통주식          &lt; 2017년 12월 27일 발행 2018년 01월 09일 등기 &gt;</p> <p>1.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8년 12월 27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 전 1개월이 되는 날(2020년 11월 27일)까지로 한다.          &lt; 2017년 12월 27일 발행 2018년 01월 09일 등기 &gt;</p>
---

전 환 사 채	
제4회 전환사채 < 2017년 12월 29일 발행 2018년 01월 09일 등기 >	
1. 전환사채의 총액 <del>금 칠억오천만원(750,000,000)</del> < 2017년 12월 29일 발행 2018년 01월 09일 등기 >	
금 450,000,000원 < 2018년 12월 31일 일부전환 2019년 01월 14일 등기 >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금 오천만원권 15매 < 2017년 12월 29일 발행 2018년 01월 09일 등기 >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프로 < 2017년 12월 29일 발행 2018년 01월 09일 등기 >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1.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2. 전환비율: 각 사채 권면금액(2이상의 사채로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으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인정하지 아니 하며,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청구 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3. 전환가액: 금 칠천원(7,000)	
4. 전환가액의 조정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left[ \frac{A+(B \times C/D)}{A+B} \right]$	
A : 기발행주식수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080616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다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18년 12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2017년 12월 29일 발행 2018년 01월 09일 등기 >

-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기명식 보통주식

< 2017년 12월 29일 발행 2018년 01월 09일 등기 >

- 1.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8년 12월 29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 전 1개월이 되는 날(2020년 11월 29일)까지로 한다.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080616
------	--------

< 2017 년 12 월 29 일 발행 2018 년 01 월 09 일 등기 >

전 환 사 채

제5회 전환사채

1. 전환사채의 총액

금 일백억원(10,000,000,000)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금 일십억원권 10매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프로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1.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2. 전환비율: 각 사채 권면금액(2이상의 사채로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으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청구 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3. 전환가액: 금 칠천원(7,000)

4. 전환가액의 조정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left[ \frac{A+(BxC/D)}{A+B} \right]$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다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080616
------	--------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18년 12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기명식 보통주식

1.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8년 12월 29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 전 1개월이 되는 날(2020년 11월 29일)까지로 한다.

2017년 12월 29일 발행      2018년 01월 09일 등기

**전 환 사 채**

제6회 전환사채

1. 전환사채의 총액  
금 오십억원(5,000,000,000)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금 오억원권 10매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프로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1.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2. 전환비율: 각 사채 권면금액(2이상의 사채로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으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청구 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3. 전환가액: 금 칠천원(7,000)

4. 전환가액의 조정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080616

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Bx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다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인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19년 01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080616
------	--------

기명식 보통주식  
 1.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9년 01월 04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 전 1개월이 되는 날(2019년 12월 04일)까지로 한다.  
 2018년 01월 04일 발행      2018년 01월 09일 등기

**전 환 사 채**

제7회 전환사채  
 < 2018년 01월 08일 발행      2018년 01월 17일 등기 >

1. 전환사채의 총액  
~~금 육억칠천팔백만원(678,000,000)~~  
 < 2018년 01월 08일 발행      2018년 01월 17일 등기 >  
~~금 408,000,000원~~  
 < 2019년 01월 08일 일부전환      2019년 01월 22일 등기 >  
~~금 378,000,000원~~  
 < 2019년 01월 09일 일부전환      2019년 01월 22일 등기 >  
 금 308,000,000원  
 < 2019년 01월 10일 일부전환      2019년 01월 22일 등기 >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금 일억원(100,000,000)권 2매, 금 구천만원(90,000,000)권 1매, 금 칠천만원(70,000,000)권 1매, 금 오천만원(50,000,000)권 1매, 금 삼천만원(30,000,000)권 6매, 금 이천팔백만원(28,000,000)권 1매, 금 이천만원(20,000,000)권 3매  
 < 2018년 01월 08일 발행      2018년 01월 17일 등기 >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프로  
 < 2018년 01월 08일 발행      2018년 01월 17일 등기 >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1.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2. 전환비율: 각 사채 권면금액(2이상의 사채로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으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청구 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3. 전환가액: 금 칠천원(7,000)
4. 전환가액의 조정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left[ \frac{A+(B \times C/D)}{A+B} \right]$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080616

C :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다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19년 01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 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2018년 01월 08일 발행 2018년 01월 17일 등기 >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기명식 보통주식

< 2018년 01월 08일 발행 2018년 01월 17일 등기 >

1.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9년 01월 08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 전 1개월이 되는 날(2019년 12월 08일)까지로 한다.

< 2018년 01월 08일 발행 2018년 01월 17일 등기 >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전 환 사 채

제8회 전환사채

1. 전환사채의 총액

금 이십억원(2,000,000,000)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금 오억원(500,000,000)권 4매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프로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1.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2. 전환비율: 각 사채 권면금액(2이상의 사채로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으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청구 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3. 전환가액: 금 칠천원(7,000)

4. 전환가액의 조정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left[ \frac{A+(B \times C/D)}{A+B} \right]$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다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등기번호	080616
------	--------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19년 01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기명식 보통주식

1.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9년 01월 10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 전 1개월이 되는 날(2020년 12월 10일)까지로 한다.

2018년 01월 10일 발행      2018년 01월 17일 등기

### 전 환 사 채

제9회 전환사채

1. 전환사채의 총액  
금 사백억원(40,000,000,000)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금 사백억원(40,000,000,000)권 1매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프로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1.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2. 전환비율: 각 사채 권면금액(2이상의 사채로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으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청구 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3. 전환가액: 금 칠천원(7,000)
  4. 전환가액의 조정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080616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left\{ \frac{A+(B \times C/D)}{A+B} \right\}$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다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19년 0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기명식 보통주식

1. 전환청구기간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080616
------	--------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9년 01월 19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 전 1개월이 되는 날(2020년 12월 19일)까지로 한다.  
2018년 01월 19일 발행      2018년 03월 30일 등기

### 전 환 사 채

#### 제10회 전환사채

##### 1. 전환사채의 총액

금 육십칠억칠천육백오십만육천원(6,776,506,000)

#####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금 사십칠억칠천오십만육천원(4,770,506,000)권 1매, 금 이십억육백만원(2,006,000,000)권 1매

#####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프로

#####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 1. 전환의 조건

1.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2. 전환비율: 각 사채 권면금액(2이상의 사채로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으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청구 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3. 전환가액: 금 팔천오백원(8,500)

##### 4. 전환가액의 조정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left[ \frac{A+(B \times C/D)}{A+B} \right]$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또는 조정 전 전환가액)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다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080616
------	--------

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19년 02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 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기명식 보통주식

1.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9년 02월 13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 전 1개월이 되는 날(2021년 01월 13일)까지로 한다.

2018년 02월 13일 발행      2018년 03월 30일 등기

### 전 환 사 채

제11회 전환사채

1. 전환사채의 총액

금 이십구억구천구백구십구만오천오백원(2,999,995,500)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금 2,999,995,500원 1매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프로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1.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2.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

가. 본건 전환사채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본건 전환사채 권면금액의 100%로 하고, 전환가격은 회사 보통주식 1주(액면금액 500원)당 사채 금액 9,500원으로 한다.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

등기번호

080616

당하는 금액은 전환주권 교부 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본건 전환사채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나.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그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본 호의 경우 조정일은 공모청약일로 하고, 회사는 조정이 발생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통보한다.

다.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과의 합병, 주식교환 등을 통해 상장을 위한 심사나 공모주청약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상장되는 등의 이른바 '우회상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먼저 아래 5호 내지 8호의 규정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 후 우회상장의 효과가 발생한 당시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 조정된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당시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그 때로부터 3년간 매 6개월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우회상장의 효과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전환 시 발행될 주식과 동일한 종류의 구주의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최근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직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라. 회사가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마.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아래의 수식에 따라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frac{A+(B \times C/D)}{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위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시가"는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기 전까지는 2호, 5호, 7호, 8호의 규정에 의한 "전환가격"으로 하되, 상장된 이후에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론 권리락주가 (유상증자 시) 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한다)

바. 합병,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주식의 분할 및 병합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사. 조정 후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미만으로 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는 주총결의 및 법원의 인가 등 액면가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액면가 미만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것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액면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액면가격으로 하는 경우, 추후 관련법규의 변경으로 액면가격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기명식 보통주식

1.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9년 06월 25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 전 1개월이 되는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080616
------	--------

날(2021년 05월 25일)까지로 한다.  
2018년 06월 25일 발행      2018년 07월 04일 등기

**전 환 사 채**

제12회 전환사채

< 2018년 07월 06일 발행      2018년 07월 16일 등기 >

1. 전환사채의 총액

금 오십육억이천만원 (5,620,000,000)

< 2018년 07월 06일 발행      2018년 07월 16일 등기 >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금 삼십삼억이천만원권 1매, 금 일십삼억원권 1매, 금 오억원권 2매

< 2018년 07월 06일 발행      2018년 07월 16일 등기 >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프로

< 2018년 07월 06일 발행      2018년 07월 16일 등기 >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1.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2. 전환비율: 각 사채 권면금액(2이상의 사채로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으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청구 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3. 전환가액: 금 구천오백원(9,500)~~

~~4. 전환가액의 조정~~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frac{A+(B \times C/D)}{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또는 조정 전 전환가액)~~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다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 감지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지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지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지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호 내지 3호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19년 07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5. 위 1호 내지 4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2018년 07월 06일 발행 2018년 07월 16일 등기 >

1.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2. 전환비율: 각 사채 권면금액(2이상의 사채로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으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청구 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3. 전환가액: 금 구천오백원(9,500)

4. 전환가액의 조정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left[ \frac{A+(B \times C/D)}{A+B} \right]$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또는 조정 전 전환가액)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등기번호

080616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다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인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호 내지 3호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19년 07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그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본 호의 경우 조정일은 공모청약일로 하고, 회사는 조정이 발생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통보한다.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과의 합병,주식교환등을 통해 상장을 위한 심사나 공모주 청약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상장되는 드의 이른바 '우회상장'을 하게 되는 우회상장의 효과가 발생한 당시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 조정된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당시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5. 위 1호 내지 4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2018 년 07 월 30 일 변경 2018 년 08 월 10 일 등기 >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기명식 보통주식

< 2018 년 07 월 06 일 발행 2018 년 07 월 16 일 등기 >

1. 전환청구기간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080616
------	--------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9년 07월 06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 전 1개월이 되는 날(2021년 06월 06일)까지로 한다.  
 < 2018년 07월 06일 발행 2018년 07월 16일 등기 >

**전 환 사 채**

제14회 사모 전환사채

1. 전환사채의 총액

금 7,550,000,000원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금 500,000,000원권 7매, 금 100,000,000원권 40매, 금 50,000,000원권 1매(공사채등록법령에 의거 등록 발행)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퍼센트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1.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2. 전환비율: 각 사채 권면금액(2이상의 사채로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으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청구 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3. 전환가액: 금 구천오백원(9,500원)

4. 전환가액의 조정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frac{A+(BxC/D)}{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또는 조정 전 전환가액)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다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080616
------	--------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호 내지 3호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19년 07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5. 위 1호 내지 4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기명식 보통주식

1.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9년 07월 31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 전 1개월이 되는 날(2021년 06월 30일)까지로 한다.

2018년 07월 31일 발행      2018년 08월 08일 등기

**전 환 사 채**

제13회 전환사채

1. 전환사채의 총액  
금 이십억원(2,000,000,000)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금 일억원권 20매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프로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1.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2. 전환비율: 각 사채 권면금액(2이상의 사채로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으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청구 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3. 전환가액: 금 구천오백원(9,500원)

4. 전환가액의 조정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

등기번호

080616

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left[ \frac{A+(BxC/D)}{A+B} \right]$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또는 조정 전 전환가액)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다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인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호 내지 3호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19년 07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5. 위 1호 내지 4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등기번호	080616
------	--------

기명식 보통주식  
 1.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9년 07월 25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 전 1개월이 되는 날(2021년 06월 25일)까지로 한다.  
 2018년 07월 25일 발행      2018년 08월 08일 등기

### 전 환 사 채

제15회 사모 전환사채

1. 전환사채의 총액

금 18,000,000,000원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금 18,000,000,000원권 1매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퍼센트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1.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2. 전환비율: 각 사채 권면금액(2이상의 사채로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으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청구 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3. 전환가액: 금 일만일천원(금 11,000원)

4. 전환가액의 조정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text{조정 후 전환가액} = \text{조정 전 전환가액} \times \left[ \frac{A + (B \times C / D)}{A + B} \right]$$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또는 조정 전 전환가액)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다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080616
------	--------

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5. 전환청구기간 :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9년 08월 28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 전 1개월이 되는 날(2021년 07월 28일)까지로 한다.

6. 전환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국민은행 증권대행부)

7.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의 범위, 전환청구 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 및 날인하여 교부받은 미발행확인서 원본과 함께 전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전환사채 권면금액 일부에 대하여는 전환청구를 할 수 없다.

8. 전환의 효력발생시기 : 위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9.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행기관과 협의하여 납입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10.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1. 미발행 주식의 보유 :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기명식 보통주식

1. 전환청구기간  
2019년 08월 28일로부터 2021년 07월 28일까지  
2018년 08월 28일 발행 2018년 09월 07일 등기

**전 환 사 채**

제16회 사모 전환사채

1. 전환사채의 총액  
금 3,000,000,000원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등기번호

080616

금 500,000,000원권 6매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퍼센트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1.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2. 전환비율: 각 사채 권면금액(2이상의 사채로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으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청구 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3. 전환가액: 금 일만일천원(금 11,000원)

4. 전환가액의 조정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frac{A+(B \times C/D)}{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또는 조정 전 전환가액)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다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080616
------	--------

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그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본 호의 경우 조정일은 공모청약일로 하고, 회사는 조정이 발생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통보한다.

바.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과의 합병, 주식교환 등을 통해 상장을 위한 심사나 공모주청약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상장되는 등의 이른바 ‘우회상장’을 하게 되는 경우 우회상장의 효과가 발생한 당시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조정된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당시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5. 전환청구기간 :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9년 12월 31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 전 1개월이 되는 날(2021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6. 전환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국민은행 증권대행부)

7.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의 범위, 전환청구 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 및 날인하여 교부받은 미발행확인서 원본과 함께 전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전환사채 권면금액 일부에 대하여는 전환청구를 할 수 없다.

8. 전환의 효력발생시기 : 위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9.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행기관과 협의하여 납입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10.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1. 미발행 주식의 보유 :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기명식 보통주식

1. 전환청구기간  
2019년 12월 31일로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2018년 12월 31일 발행 2019년 01월 14일 등기

### 전 환 사 채

제17회 사모 전환사채

1. 전환사채의 총액  
금 2,999,997,000원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퍼센트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금 2,999,997,000원권 1매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1. 전환의 조건

1.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2. 전환비율: 각 사채 권면금액(2이상의 사채로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으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청구 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3. 전환가액: 금 일만일천원(금 11,000원)
4. 전환가액의 조정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text{조정 후 전환가액} = \text{조정 전 전환가액} \times \left[ \frac{A + (B \times C / D)}{A + B} \right]$$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또는 조정 전 전환가액)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다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그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본 호의 경우 조정일은 공모청약일로 하고, 회사는 조정이 발생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통보한다.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080616
------	--------

<p>바.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과의 합병, 주식교환 등을 통해 상장을 위한 심사나 공모주 청약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상장되는 등의 이른바 ‘우회상장’을 하게 되는 경우 우회상장의 효과가 발생한 당시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조정된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당시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p> <p>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p> <p>5. 전환청구기간 :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0년 2월 28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 전 1개월이 되는 날(2022년 1월 28일)까지로 한다.</p> <p>6. 전환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국민은행 증권대행부)</p> <p>7.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의 범위, 전환청구 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 및 날인하여 교부받은 미발행확인서 원본과 함께 전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전환사채 권면금액 일부에 대하여는 전환청구를 할 수 없다.</p> <p>8. 전환의 효력발생시기 : 위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p> <p>9.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행기관과 협의하여 납입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p> <p>10.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11. 미발행 주식의 보유 :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p> <p>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기명식 보통주식</p> <p>1. 전환청구기간 2020년 2월 28일로부터 2022년 1월 28일까지 2019년 02월 28일 발행      2019년 03월 08일 등기</p>
---

<p><b>신 주 인 수 권 부 사 채</b></p>
<p>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p> <p>1. 본사채는 신주인수권부사채임.</p> <p>1. 주식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 금 이백오십억원(25,000,000,000)</p> <p>1.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 금 일십억원(1,000,000,000)권 23매, 금 일억원(100,000,000)권 20매</p> <p>1.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금액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프로</p> <p>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금 이백오십억원(25,000,000,000)</p> <p>1.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1.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p>

등기번호	080616
------	--------

2. 신주인수권 행사비용: 각 신주인수권 권면금액(2이상의 사채로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행사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으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청구 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3. 행사가액: 금 칠천원(7,000)

4. 행사가액의 조정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x  $\left[ \frac{A+(B \times C/D)}{A+B} \right]$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주식으로 인수되었다면 신주인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발행회사가 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상장의효력발생일로부터,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기일 또는 합병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에 대한 거래소 등 객관적인 시가가 확인될 수 있는 날 중 이른 때로부터 매 3개월마다 행사가격을 조정하되, 행사가 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소급한 최근 1개월, 1주일, 최근일을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격과 직전 행사가격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하기로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등기번호	080616
------	--------

행사가액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9년 01월 30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 전 1개월이 되는 날(2020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2018년 01월 30일 발행      2018년 03월 30일 등기

### 신 주 인 수 권 부 사 채

#### 제2회 신주인수권부사채

1. 본사채는 신주인수권부사채임.

1. 주식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

금 이백오십억원(25,000,000,000)

1.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

금 이백오십억원(25,000,000,000)권 1매

1.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금액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프로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금 이백오십억원(25,000,000,000)

1.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1.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2. 신주인수권 행사비율: 각 신주인수권 권면금액(2이상의 사채로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행사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으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청구 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3. 행사가액: 금 구천오백원(9,500)

4. 행사가액의 조정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x  $\frac{A+(BxC/D)}{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

등기번호

080616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주식으로 인수되었다면 신주인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발행회사가 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상장의효력발생일로부터,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기일 또는 합병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에 대한 거래소 등 객관적인 시가가 확인될 수 있는 날 중 이른 때로부터 매 3개월마다 행사가격을 조정하되, 행사가 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소급한 최근 1개월, 1주일, 최근일을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격과 직전 행사가격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하기로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9년 05월 25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 전 1개월이 되는 날(2021년 4월 25일)까지로 한다.

2018년 05월 25일 발행 2018년 05월 28일 등기

주식매수선택권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벤처기업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상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인당 행사가격은 제1항에 의해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른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인당 행사가격은 제1항에 의해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3) ~~임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2017년 11월 15일 신청착오로 인한 경정 2017년 11월 15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 직원으로 하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 및 부여채외 자는 제1항에 의하여 적용되는 각 관계법령에 따른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 직원 및 관계법령에 의해 인정하는 자로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 및 부여채외 자는 제1항에 의하여 적용되는 각 관계법령에 따른다.~~

~~< 2016년 12월 23일 변경 2017년 01월 16일 등기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 직원 및 관계법령에 의해 인정하는 자로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 및 부여채외 자는 제1항에 의하여 적용되는 각 관계법령에 따르며, 임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100을 초과할 수 없다.~~

~~< 2017년 10월 27일 변경 2017년 11월 08일 등기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 직원 및 관계법령에 의해 인정하는 자로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 및 부여채외 자는 제1항에 의하여 적용되는 각 관계법령에 따른다.~~

~~< 2017년 11월 15일 신청착오로 인한 경정 2017년 11월 15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하여야 하고, 위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 제17조의 신주의 배당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등기번호	080616
------	--------

가)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나)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다)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성립연월일** 2016 년 03 월 02 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16 년 03 월 02 일 등기

수수료 700원 영수함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열 램 용

\* 본 등기기록은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기록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